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 현장소장이던 A씨, 공사 안전 기원과 단합 도모를 위한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게 됩니다.

정상에 이르러 A씨는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로자 A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알아봅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즉,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은 원심에서

‘사업주 주관의 행사에 참여했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에서 비롯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추운 날씨에 개최된 산행행사에 A가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亡人이 死亡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A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출처/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률이야기)